

제3065호
2024. 2. 22.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20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 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20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skc3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